

환경부 고시 제 2009 - 87 호

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

2009년 6월 18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정이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9. 7. 1일부터 시행예정인 「탄소포인트제」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과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「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

※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(2008. 9. 19)에 의거 시행

2. 주요내용

가. 「탄소포인트제도」운영기관의 역할을 정함

- (1) 환경부 : 제도운영 총괄 및 소요예산 수립·지원
- (2) 환경관리공단 : 운영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
- (3) 지자체 : 프로그램 관리,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시행

나. 「탄소포인트제도」참여자격 및 방법과 실시항목을 정함

- (1) 참여자격 : 개인 및 세대주, 시설소유자 및 사용자
- (2) 참여방법 : 운영프로그램 가입 또는 서면 가입
- (3) 실시항목 : 전기, 수도, 가스, 지역난방 중에서 지자체 선택

다. 배출계수 및 기준사용량과 포인트 산정방법을 정함

- (1) 배출계수 : 전기 → $424\text{gCO}_2/\text{KWh}$, 수도 → $332\text{gCO}_2/\text{m}^3$
도시가스 → $2,780\text{gCO}_2/\text{m}^3$
- (2) 기준사용량 : 최근 2년간의 동일한 월의 평균값
- (3) 포인트의 산정 :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 10gCO_2 당 1포인트로 환산

라. 인센티브의 종류, 상한액 및 지급방법과 국고지원 비율을 정함

- (1) 종류 : 현금, 상품권, 쓰레기봉투, 교통카드, 공공시설 이용권 등
- (2) 상한액 : 1포인트 당 3원, 단순참여 인센티브 10,000원/년
- (3) 국고지원 비율 : 국가 : 지자체 = 50 : 50
- (4) 인센티브 지급방법으로 탄소캐쉬백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

마. 지자체의 재량 및 기타

- (1)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「탄소포인트제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 규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세부운영계획과 제도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
- (2) 시범사업 참여자의 기존 포인트 인정

환경부공고 제2009-219호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2009년 6월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공공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도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공공하수도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, 범위, 절차 및 위탁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적정운영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하수도 서비스 평가(안 제69조의2)

- (1) 상하수도 서비스평가가 국제표준화기구(ISO) 및 국가표준규격(KS)으로 제정(KS M ISO 24510)됨에 따라 상하수도서비스평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
- (2) 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도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하수도 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
- (3) 서비스평가 도입으로 공공하수도의 적정운영으로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

나.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(안 제74조)

- (1) 공공하수도 위탁관리가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('07년 기준 전체 하수도시설 가운데 64% 관리위탁) 그동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위탁에 관한 시행절차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음
- (2) 공공하수도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, 범위, 절차 및 위탁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
- (3) 공공하수도 위탁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

3. 의견제출

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 /법령마당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물산업지원팀(전화 : 02)2110-768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